

국립국악원 당직근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일·숙직 유형별 대상자의 구분(제3조)

나.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 내에 당직후무 부여(제7조)

다. 그 외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기관 없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당직의 구분) ① (생 략)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 <u>휴무일</u> ”)의 <u>주간에</u> 두며 그 근무시간은 <u>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u> 준한다. ③ (생 략)	제2조(당직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휴무일</u> ”이라 한다)에 두며 --- -----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등) ① 당직근무자는 5급 이하의 직원 <u>1인</u> 으로 편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직: <u>5급(상당) 공무원 또는 6급(상당) 이하 여성공무원</u> 2. 숙직: <u>6급(상당)이하 남성공무원 1명</u> ② (생 략)	제3조(당직의 편성 등) ① ----- ----- <u>1명</u> ----- ----- ----- 1. 일직: <u>5급(상당) 이하 여성공무원</u> 2. 숙직: <u>5급(상당) 이하 남성공무원</u>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u>개시 시간 30분 전에</u> 기획관리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u>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u>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 <u>개시 시간 최소 30분 전에</u> ----- ----- ----- ----- <u>정상근무일에</u>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7조(숙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생략) ② <u>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 종료 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과·실의 장은 업무의 편의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u> 제9조(당직근무의 일반임무) ① (생략) 1. (생략) 2. <u>경비원</u> ----- 3. (생략) 4. ~ 6. (생략) ② ~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립국악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u> 제9조(당직근무의 일반임무)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경비요원</u> ----- 3.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